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849
----------	-------

제안연월일 : 2026. 5.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3954호)	조지연의원	2025. 11. 6.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 회의(2026.3.24.)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 원회 회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5150호)	정부	2025. 12. 1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 회의(2026.3.24.)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 원회 회부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2026. 4.

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
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2026. 4. 7.)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신제품 판매 시 적용되던 포장재 및 폐제품의 무상 회수 범위를 설치 수반되는 대형제품 중심으로 현실화하고 제품별 상세 구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판매자의 과도한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을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숙련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용어정비를 통해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개별 조항(제19조)의 ‘폐기물’ 정의 규정을 총칙으로 이전하여 ‘폐기물’로 약칭 정의함(안 제2조 및 제19조).

나. 전기·전자제품 판매 시 적용되던 포장재 및 폐제품 무상 회수 의무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안 제16조의4).

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취급 품목을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조례로 세부 사

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라.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
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4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1. 신제품의 포장재

2. 폐기물로 배출하는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품의 구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폐기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폐배터리등”을 각각 “미래폐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제1항에 따라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이하 “미래폐자원”이라 한다)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하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및 연료전지로서 폐기물로 된 것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탑재된 구동축전지로서 폐기물로 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동축전지 또는 연료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부품·장치로서 폐기물로 된 것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4.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핵심 부품으로서 폐기물로 된 것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전문인력의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폐전기·폐전자제품”이란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p> <p>4. ~ 7. (생략)</p> <p>제16조의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p> <p>① ~ ④ (생략)</p> <p>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p> <p>4. ~ 7.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의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p> <p>1. 신제품의 포장재</p> <p>2. 폐기물로 배출하는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p>

제19조(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부과금 등의 용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용·회수를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 6. (생략)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품의 구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부과금 등의 용도) -----

-----.

1. 폐기물-----

2. ~ 6.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이하 “미래폐자원”이라 한다)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하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및 연료전지로서 폐기물로 된 것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탑재된 구동축전지로서 폐기물로 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동축전지 또는 연료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부품·장치로서 폐기물로 된 것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4.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②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폐배터리등의 회수·보관·재활용에 관한 업무
2. 폐배터리등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3. 폐배터리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서 폐기물로 된 것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② -----
-----.

1. 미래폐자원-----

2. 미래폐자원-----

3. 미래폐자원-----

③ ----- 제1항에 따라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설치 및 운영-----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5(전문인력의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